

사업설명회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 안내

2015. 2.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I. 개 요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이란?

모기업(원도급업체)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공단은 현장기술지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

● '12년~'13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14년부터 공단에서 추진

*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기 위함임

Ⅱ. 추진절차



Ⅲ. 세부추진 절차

1 사업대상 선정 (고용부, 공단)

- 참여대상 : 원·하청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대상업종 : 제조업, 전기업, 통신업,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 사업대상 선정 기준
 - ✓ ①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사업장
 - ✓ ② 모기업 및 협력업체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
 - ✓ ③ '12~'14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 ✓ ④ 최근 도급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등 사업참여 필요사업장

Ⅲ. 세부추진 절차

2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15.3.2(월) ~ 3.13(금), 2주간
- 제출처 : 모기업 소재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제출서류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첨부1]사업장 현황 조사표

[첨부2]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 사외 협력업체는 자율적 참여, 단 주기적으로 정비·보수 업무를 하는 사외협력업체는 반드시 포함

[첨부3]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첨부4]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Ⅱ. 세부추진 절차

[illegible]

[신청서]

[illegible]

[첨부1 : 현황조사표]

[illegible]

[첨부2 : 협력업체 현황]

[illegible]

[첨부3 : 세부계획서]

2015년 4월 4일

산업연방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우리 사업장은 2015년도 안전보건 종합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연방 4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산업연방 4대 필수 안전수칙 —

1. 보호구 착용
2. 안전감시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표자

필명일직 대표자

2015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4 : 안전수칙 서약서]

● 프로그램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안전보건 공생 협력단 구성·운영 방법
- ✓ 참여대상 협력업체 명단(협력업체 자체선정계획 포함)
- ✓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실시 계획·방법
 - * 프로그램에는 '위험성평가 인정', 'KOSHA18001 인증' 지원 계획 포함
- ✓ 위험성평가 결과 등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계획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 ✓ 프로그램(활동) 평가 계획 등

Ⅲ. 세부추진 절차

3 프로그램 심사·승인 [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 3월말
- 심사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항목
 - ✓ 대기업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의지(비전, 인적·물적 추진계획)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산재취약사업장 선정)
 -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책임자급을 포함한 적정한 조직구성)
 -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협력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계획)
 - ✓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향상 지원계획)
 - ✓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위험성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 ✓ 성과평가 계획의 적정성(계획대비 이행도 측정, 만족도 조사 등)

표. 세부추진 절차

[붙임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

■ 사업장명 (원도급업 체명):

평가항목	평가 지표(판단 기준)	평가결과
대기업의 공생협력 추진의지	☐ 사업장이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의지가 있는가? ☒ 우수: 사업주가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피감한 인적·물적 투자 계획을 담고 있음 ☒ 보통: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않으며,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이 다소 미비함 ☒ 미흡: 사업주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대기업 안전보건 권리 체계가 미흡함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공생협력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나? ☒ 우수: 사내·외를 포함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신재취득 사업장을 모두 선정 ☒ 보통: 자체 선정기준이 없어 사내·외 협력업체를 선정 ☒ 미흡: 고위험 사업장을 누락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협력업체 중심으로만 선정 • 화학공정, 발전회사 등은 유지/보수/정비 사외 협력업체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 협력단의 구성이 적정한가? ☒ 우수: 책임자(공정장 이상)로 구성하고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직을 구성 (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하고 활동 결과를 사업장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된 경우 ☒ 보통: 책임자(공정장 이상)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조직(외부전문가에 의한 협력업체 지원 포함) 구성이 미비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구성·운영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 협력단의 공생협력 추진 활동 계획이 적극적인가? ☒ 우수: 재해발생 수준, 위험공정 등 업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활동(위험성평가·오 니터링·평가 등) 계획 및 협의회 정기적 개최 등 계획의 적극성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사업 계획의 효과성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였는가? ☒ 우수: 재해발생 수준, 위험공정 등 업체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협력업 계별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증/인정 계획 포함)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 우수 ☐ 보통 ☐ 미흡
협력사업 투자의 적정성	☐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정한지? ☒ 우수: 평가에 따른 협력업체별 또는 항목별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집행 계획 작성 ☒ 보통: 전체적인 예산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은 결여 ☒ 미흡: 전체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없음	☐ 우수 ☐ 보통 ☐ 미흡
프로그램 성과평가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 계획이 적정한지? ☒ 우수: 당초 계획대비 프로그램 성실 이행도 측정, 적용법규 준수 여부, 하청업체 대 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포함 ☒ 보통: 전체적인 활동계획은 작성되어 있으나, 업체별 등 구체적인 계획 미비 ☒ 미흡: 단순 재해감소 효과만 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종합판정		

[공생협력 프로그램 심사표]

심사기준

- 승인(미흡0개)
- 보완(미흡 1개~3개)
- 불승인(미흡 4개 이상)

✓ 보완사업장은 10일 이내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에 다시 제출,
공단은 보완사항 확인 후
승인

Ⅲ. 세부추진 절차

4

개선계획서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 5.15일
- 제출처 : 모기업 사업장 소재 공단 지역본부(지사)
-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개요(협력업체별 일정, 방법 등)
 - ✓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일정포함)
 - ✓ 위험성 감소를 위한 투자예산(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명시)
 - ✓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계획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이행계획 등

Ⅲ. 세부추진 절차

5 현장기술지도 (공단 → 사업장)

- 지도기간 : 6월~7월
- 지도대상
 - ✓ '14년 C등급, '15년 신규참여, '14년 B등급 중 지도 필요사업장
- 지도내용(제출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지도 실시)
 - ✓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지도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교육, 근로자의 참여여부 확인
 - ✓ 위험성평가 내용 적정여부 지도
 - ✓ 협력업체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요인 추가 발굴 등

Ⅲ. 세부추진 절차

6 추진실적 제출 (사업장 →공단)

- 제출기간 : ~9월말
- 제출처 : 모기업 사업장 소재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제출 내용
 - ✓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 및 노력, 공생협력 규정
 - ✓ 공생협력단 조직, 활동계획 및 실적,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 예산책정 등
 - ✓ 위험성평가 계획, 교육실적, 감소대책에 따른 개선내용
 -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 실적
 -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지키기 추진실적(교육, 보호구 지급 등)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실적
 - ✓ 참여 협력업체의 만족도 조사(대표자 및 근로자) 결과
 - ✓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Ⅲ. 세부추진 절차

7

확인지도(모니터링) [공단 → 사업장]

- 지도기간 : 10월
- 지도 대상 : '15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전수)
- 지도(모니터링)내용
 - ✓ 현장 기술지도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여부 확인
 - ✓ 개선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 ✓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 ✓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등

Ⅲ. 세부추진 절차

8 등급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11월
- 심사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평가항목

[대기업 부문] [60%]

- ✓ 공생협력 추진의지(10%)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15%)
-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20%)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15%)

[협력업체 부문] [40%]

-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40%)

Ⅲ. 세부추진 절차

세부평가항목

□ 공생협력 추진의지(10%)

-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 수준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적정성(15%)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규정 작성 · 공유
-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
-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Ⅲ. 세부추진 절차

□ 위험성평가 실행수준(20%)

● 위험성평가 계획(P)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 ✓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
- ✓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활용

● 위험성평가 이행(D)

-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여부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위험성크기 추정,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 위험성평가 이행확인(C)

● 지속적 개선(A)

● 기록

Ⅲ. 세부추진 절차

□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평가(15%)

- 공생협력 프로그램 계획 대비 이행도
- 적용법규의 준수(산안법 제29조)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노력도
-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40%)

-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 ✓ 참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험성평가 인정) 비율
- 재해발생 수준
 - ✓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감소율
 - ✓ 참여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

표. 세부추진 절차

[붙임 9]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표

1. 사업장(원도급)명:

구 분		만점(X)	득점(Y)	가중치(a)	총합점수(Y/X×a=2)
합 계		100		100	
대기업 부분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00		10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00		15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100		20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	100		15	
협력업체		E. 자물안전보건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100	40	

2. 평가항목 및 기준

득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대 기 업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00	
	1. 사회적 책임	○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0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100	
	1. 발령규정 수립	○ 공생협력 규정 작성공유	5	
		○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25	
	2.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20	
		○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20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	20	
	3.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 공생협력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10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만점 부여 가능)		100	
			-	
	1. 계획(P)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수립	10	
		○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	5	
		○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5	
		○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 위험성 크기 추정	5	
		○ 위험성 결정	5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 개선활동 및 이행대부 확인	10	
		○ 수시 정기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10	
	4. 지속적개선(사)	○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유지관리	5	
		○ 평가 결과	5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		100	
	1. 계획대비 이행도	○ 당초 계획대비 이행 정도	30	
	2. 적정성 평가 준수	○ 협력단 구성·운영, 활동·준비·점검, 작업관행·특정 등 분규 준수 정도	10	
	3. 산업안전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 산업안전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정도 조성 노력정도	10	
	4. 인력도 조사 및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25	
	원투	○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25	
협력 업체	E. 협력업체 자물안전보건 실행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100	
	1. 자물안전보건 실행수준	○ 공생협력 참여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위험성평가 인정) 비율	50	
		○ 공생협력 참여 사업장의 재해감소율	20	
	2. 재해발생 수준	○ 공생협력 참여 사업장의 급·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	30	

- 81 -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표]

등급관리(고용부)

- A등급

- ✓ 다음년도 1년간 감독유예(고용부)
- ✓ 다음년도 1년간 KOSHA18001 사후심사비 할인(공단)

- B등급

- ✓ 인센티브 없음

- C등급

- ✓ 2회연속 'C등급'평가 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또는 안전보건진단명령 (고용부)

IV. 우수사례 발표대회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시기 :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 시
- 장 소 : COEX(서울)
- 참가대상 :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모기업)
-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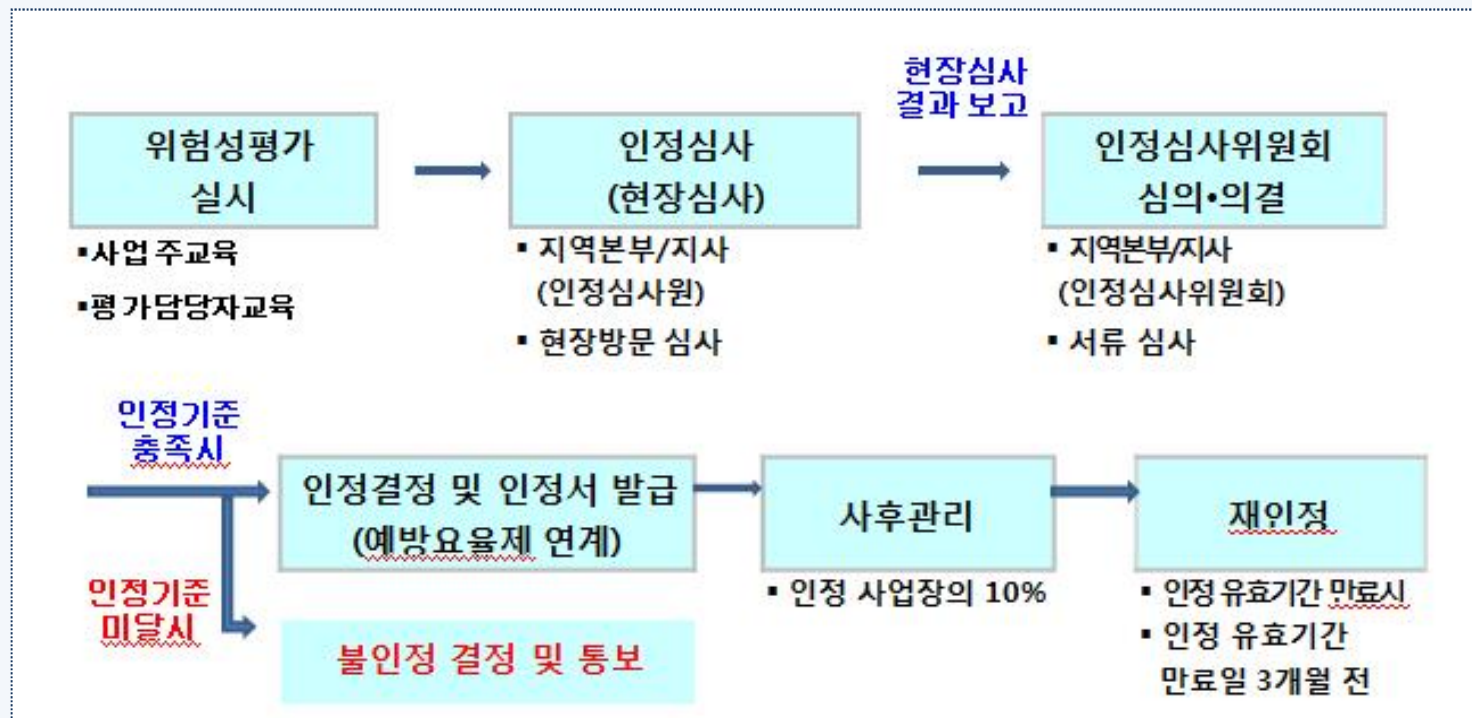
구 분	훈 격	대 상(개소)		시상내역
		제조 분야	서비스 분야	
대 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1	1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최우수상	공단 이사장상	1	1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공단 이사장상	2	2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발표대회 세부일정 확정 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V. 참고(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 대상 :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 신청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 업무처리절차



IV. 참고(산재예방 요율제)

□ 산재예방 요율제

- 개념 : 안전보건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인하
-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미만 사업장(보험료징수법)
- 적용방법
 - ✓ 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 위험성평가인정과 사업주교육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 적용.
 -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 인정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인정 취소(고용부)
-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의 신청(사업주)→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재해예방 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보험료율 반영(근로복지공단)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